

위원회

위원회 설치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일반 행정과 학사 행정을 시행함에 있어 총장의 자문을 위하여 주요 사안을 예비, 심의할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제3조 (위촉 및 임기)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단, 각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당연직은 위촉하지 아니한다.

② 각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결원 시 보충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단 임기 만료 시 재 위촉이 없을 때에는 재위촉 시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4조 (규정) ① 각 위원회는 위원회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관 규칙, 직제 규정 등이 상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재정하여야 하며, 재정 후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학교 정관, 학칙, 직제 규정 및 본 위원회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회의)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각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록) ① 위원장은 위원 중 서기를 위촉하거나 직원 중 간사를 위촉하여 회의록을 작성토록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과 서기(또는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 작성 후에는 회의에서 낭독케 한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대학원 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55조에 근거하여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 사항) 위원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발전 종합 계획과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전공의 증. 개편 및 학생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4. 대학 기구 및 부속. 부설기구의 개폐에 관한 사항
5. 교육 과정 및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6.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7. 입학, 졸업, 수업, 학생지도 상벌에 관한 사항
8. 연구비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9. 기타 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장이 임명하는 6명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 (회의 소집과 의결)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록은 위원장 및 출석위원의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 관장) 위원회에 관한 제반 업무는 교학처에서 관장한다.

제8조 (시행 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대학 평의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인 정관 제26조의 2(대학 평의회의 설치), 제26조의 8(운영 규정), 학칙에 의하여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학 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의회의 기능)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 교육 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 이사 추천 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조직

제3조 (구성·자격) ① 평의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평의원 : 4명
2. 직원 평의원 : 2명
3. 학생 평의원 : 2명
4. 동문 평의원 : 1명
5. 기타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 2명

② 학생 평의원은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한다.

제4조 (추천·위촉) ① 교원 평의원은 교수회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직원 평의원은 직원 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학생 평의원은 재학생 중 총학생회에서 추천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 동문 평의원은 총동문회에서 추천한 자를 이사장이 위촉한다.

⑤ 기타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5조 (평의회 의장 등) ① 평의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 ④ 평의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평의원은 예외로 한다.

-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③ 총장은 평의원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각 구성단위 대표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각 구성단위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④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각 구성단위 대표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3장 회의

제7조 (회의)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 회의는 매년 학기 초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8조 (의사·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회의록)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전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석·자료 제출) ① 평의원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교직원에게 평의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교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 유지) 평의원회 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원회 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예산)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주관 등) ① 평의원회 회의는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평의원회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 (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내규) 평의원회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평의원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제6조의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 평의원은 학생회칙에 규정된 당해 총학생회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 ③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한신학대학원 정관 제48조 내지 제55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이사장이 임명하는 5인(위원장을 포함한다)의 교직원으로 조직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3조 (인사 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의 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총장이 보직 교수의 보직을 제청하고자 할 때 그 보직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3. 위원회가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가 정관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 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 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건학 이념의 구현 및 학교 발전에의 기여도

4.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의 유지

제6조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 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 하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교무과장으로 한다.

제8조 (운영 세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교원징계위원회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위원회는 교원의 품위 유지와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교원의 징계를 통해 건전한 교원상 정립을 유지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교법인의 이사 또는 당해 학교의 교원 중에서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동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제5조 (징계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징계 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1. 교육공무원법, 기타 법령 및 학교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교직원 간에 폭행, 구타 행위를 한 때
4. 교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실추한 때
5. 교원 간의 인화를 해치거나 파벌을 조성한 때
6. 직무상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였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케 하였을 때
7. 소속장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하였을 때
8. 학교의 교육목적과 위배된 교육을 하였을 때

제6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7조 (징계의 효력) 징계의 종류별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은 그 직을 면함과 동시에 퇴직금은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
2. 감봉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하고, 감봉액을 징계 기간 중 본봉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감할 수 있다.
3. 견책은 문서 또는 구두로 잘못을 반성케 한다.

제8조 (징계 대상자 출석) ① 위원회는 <별지 서식 제1호>에 의한 출석 통지서로 징계 대상자를 출석시켜 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 대상자가 2회 이상의 출석 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

하고 서면 심사에 의하여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제9조 (징계 의결의 기한) 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서 <별지 서식 제2호>를 받은 때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결의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징계 의결 정족수) 징계 의결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 (징계 의결서) 위원회 징계 의결은 회의록에 기재하여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징계 의결서 <별지 서식 제3호>에 의하여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 증거 관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제척 사유) 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 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3조 (위원의 기피) ① 징계 대상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과 징계대상자가 친족관계에 따른 제척 또는 제1항에 따른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징계 의결 시 정상 참작)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5조 (징계의 집행) ① 징계 의결 요구자는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권자의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의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징계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한 <별지 서식 제4호>의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본인에게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제16조 (징계 사유의 시효) 교원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17조 (징계 보류) 징계에 부여하여야 할 사건이 형사 재판에 계류 중인 때에는 징계 절차를 보류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 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⑤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직원징계위원회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직원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위원회는 직원의 품위 유지와 직원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직원의 징계를 통해 건전한 직원상 정립을 유지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동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총장이 약간 명의의 위원을 특별 초청할 수 있다.

제5조 (징계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징계 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1. 교육공무원법, 기타 법령 및 학교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교직원 간에 폭행, 구타 행위를 한 때
4. 직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실추한 때
5. 직원 간의 인화를 해치거나 과벌을 조성한 때
6. 직무상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였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케 하였을 때
7. 소속장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하였을 때
8. 학교의 교육목적과 위배된 행동을 하였을 때

제6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7조 (징계의 효력) 징계의 종류별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은 그 직을 면함과 동시에 퇴직금은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
2. 감봉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하고, 감봉액을 징계 기간 중 본봉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감할 수 있다.
3. 견책은 문서 또는 구두로 잘못을 반성케 한다.

제8조 (징계 대상자 출석) ① 위원회는 <별지 서식 제1호>에 의한 출석 통지서로 징계 대상자를 출석시켜 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 대상자가 2회 이상의 출석 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

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심사에 의하여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제9조 (징계 의결의 기한) 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서 <별지 서식 제2호>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결의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징계 의결 정족수) 징계 의결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 (징계 의결서) 위원회 징계 의결은 회의록에 기재하여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징계 의결서 <별지 서식 제3호>에 의하여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 증거 관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제척 사유) 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 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3조 (위원의 기피) ① 징계 대상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4조 (징계 의결 시 정상 참작)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5조 (징계의 집행) ① 징계 의결 요구자는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권자의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의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징계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한 <별지 서식 제4호>의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본인에게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제16조 (징계 사유의 시효) 직원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17조 (징계 보류) 징계에 부여하여야 할 사건이 형사 재판에 계류 중인 때에는 징계 절차를 보류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 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2호>

징계 의결 요구서				
인적 사항	성명		소속	
			직명	
	본적			
	주소			
징계 사유				
징계 의결 요구자의 의견				
위와 같이 징계 의결을 요구함				
년 월 일				
직위: (인)				
징계 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서식 제3호>

징계 의결서			
	직명	성명	소속
징계 대상자의 인적 사항			
의결 주문			
이유			
년 월 일			
징계 위원회 위원장			(인)
의원			(인)
의원			(인)
의원			(인)
서기			(인)

<별지 서식 제4호>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		
직명	성명	소속
주문		
이유		
상기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기관장(임명권자)		(인)
귀하		

국제 교류 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외국대학 및 외국학술기관과의 자매결연, 연구 인력 교류, 학문 교류 및 공동 연구에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제교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장은 국제어학원장으로 하고, 이사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4조 (상임위원) ① 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외국 대학 및 연구 기관 등과의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2. 외국 대학 및 연구 기관 등과의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3. 외국 대학 및 연구 기관 등과의 교수 교환 근무에 관한 사항
4. 외국 대학 및 연구 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 수행에 관한 사항
5. 교수 해외 파견 연구 관련 사항
6. 교직원의 국외 연수에 관한 사항
7. 유학생 선발,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국제 교섭) 국제 학술 교류에 관하여 그 업무의 성질에 따라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교섭을 행할 수 있다.

제8조 (주관 등) 회의는 국제어학원에서 주관하며, 간사는 국제어학원 교학팀장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도서관 위원회

제1조 (설치)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도서관에 도서관장의 자문 기관으로 도서관 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본 위원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명
2. 서 기 : 1명
3. 위 원 : 4명
4. 간 사 : 1명(도서관 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5. 위원장은 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3조 (위원회의 직능)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 구입 선정, 폐기 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제4조 (회의) 본 위원회는 분기별로 위원장의 소집으로 이를 개최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